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 지 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 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3조)

- “관리계획” → “종합관리계획”

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의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

- 「수도법」 제4조 → 「수도법」 제5조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었고, 「수도법」 근거 조문이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및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 개정 및 일부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의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제1항 본문 중 “관리계획”을 “종합관리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함.
 - 제3조제2항 본문 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5조로,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관련 부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변경 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에 대하여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